

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미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1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2.

발의자 : 문미옥 · 유승희 · 소병훈

정재호 · 윤후덕 · 김민기

기동민 · 김영진 · 표창원

한정애 · 조승래 · 유동수

김철민 · 어기구 · 강창일

김상희 · 김병기 · 신창현

김병관 · 김한정 · 변재일

김종민 · 송기현 · 백재현

김영춘 · 최운열 · 원혜영

심기준 의원(2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참조표준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고, 생체데이터, 신재생에너지, 신소재 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조표준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참조표준을 제정·평가하고 보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사항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, 참조표준 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참조표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 국가표준제

도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의 수집·분석·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).

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측정데이터의 수집·분석·평가 체계의 확립
2.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
3.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
4.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6조(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측정데이터의 수집·분석·평가 체계의 확립</u> 2. <u>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</u> 3. <u>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</u> 4. <u>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</u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</u></p>